

賞罰委員會規定

(2009년 11월 13일)

慶州崔氏峻雲公後孫宗中

賞罰委員會規定

상벌 위원회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제 1장 總則

총칙

제1조(目的)

목적

本規定은 慶州崔氏峻雲公派宗中規約 제7條 및 8條를 施行함에 그
本 규정 경주 최 씨 중 윤 공 파 종중 규약 조 조 시행
運營에 관한 事項을 定하고, 宗中の 健全한 發展과 宗中の 秩序
운영 사항 정 종중 건전 발전 종중 질서
維持를 위하여 賞罰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유지 상벌 사항 규정 목적

제2조(適用範圍)

적용범위

宗員의 褒賞 및 懲罰에 관한 事項은 本規定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종원 포상 징벌 사항 본 규정 정

제3조(賞罰委員會構成)

상벌

위원회

구성

- 宗中規約 제7조 3항에 依據 宗中會長은 必要時 “賞罰委員會”
종중 규약 의거 종중 회장 필요 시 상벌 위원회
를 理事會內에 構成할수있다.
이사회 내 구성
- 賞罰委員會는 任員 (會長, 副會長, 理事: 8人 事務局長, 監事:
상벌 위원회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인 사무국장 감사
2人) 으로 構成한다
인 구성
- 賞罰委員會의 委員長은 宗中會長으로, 副委員長은 宗中 副會長
상벌 위원회 위원장 종중 회장 부위원장 종중 부회장
으로 한다.

제4조(賞罰委員會의 機能)

상벌

위원회

기능

賞罰위원회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상벌 사항 심의 결정

- 宗員의 褒賞關係의 審議決定
종원 포상 관계 심의 결정
- 宗員의 懲罰關係의 審議決定
종원 징벌 관계 심의 결정

제5조(賞罰委員會 召集)

상벌

위원회

소집

宗中會長은 다음과 같은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 賞罰委員會의 召集을 하여야한다.

1. 宗中規約 제 7조 1.2항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
2. 賞罰委員會 委員 3분의 2이상의 召集要請이 있을 때

제6조(賞罰委員會 議決期限)

賞罰委員會는 賞罰에 관한 審議를 시작한날부터 30일 以內 賞罰에 관한 議決을 하여야한다.

但. 懲戒事項으로 該當者의 再審議 要求로 賞罰委員會의 再審議의 決定이 이루어지는 境遇 그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成員 및 議決)

賞罰委員會는 委員 3분의2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委員 3분의 2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8조(議決의 效力)

賞罰委員會의 議決은 委員長이 宣言함으로 效力이 發生한다.

제 2장 褒賞

제9조(褒賞基準)

1. 對內外的으로 宗中の 位相을 높인자.
2. 宗中の 財政에 도움을 준자.
3. 宗員 中 父母를 供養하고, 孝行이 至極한 宗員(孝子, 孝婦)에 대하여, 理事會의 推薦으로 賞罰委員會의 審議 議決로 褒賞決定된자.
4. 宗員有故時 功績이 顯著하여 賞罰委員會에 回附 되어 審議 議決된자.

제10조(褒賞의 種類)

1. 賞狀 또는 功勞牌 贈呈

2. 賞金支給
상금 지급

3. 功績碑 (追慕碑) 등 建立
공적 비 추모 비

4. 其他
기타

제 3장 懲戒 징계

제 11조 (懲戒基準) 징계 기준

1. 本會規約을 違反한때.
본회 규약 위반
2. 本會議 各級會議 決議事項을 違反하였을 때.
본회의 각급 회의 결의 사항 위반
3. 本會議 名譽를 毀損한자.
본회의 명예 훼손
4. 中傷謀略으로 宗員間에 離間紛爭을 惹起 시킨자.
중상 모략 종원 간 이간 분쟁 야기
5. 本會議 財産을 橫領하여 損害를 끼친자.
본회의 재산 횡령 손해
6. 本會를 憑藉하여 誠金募金行爲를 한자.
본회 빙자 성금 모금 행위
7. 業務上 重過失로 宗中에 損害를 입힌자.
업무 상 중 과실 종중 손해
8. 位階秩序를 無視한 亡種行爲를 한자.
위계질서 무시 망종 행위

제 12조 (懲戒의 種類) 징계 종류

1. 公開謝過
공개사과
 2. 譴責
견책
 3. 被害辨償
피해 변상
 4. 2년 이상 參祀不許
이상 참사 불허
 5. 3년 이상 資格停止
이상 자격 정지
 6. 宗員의 資格喪失
종원 자격상실
- 12조 4항의 2년 이상 參祀不許는 各種會議 및 宗中行事의 參與禁止등
包括的으로 適用한다.
포괄적 적용
 - 12조 5항의 3년 이상 資格停止는 各種行事의 參禮, 參祀가 禁止되며,
이상 자격정지 각종행사 참례 참사 금지

宗員의 資格이 其間內 停止된다.
종원 자격 기간 내 정지

- 12조 6항의 資格喪失은 永久히 宗員의 資格이 喪失됨을 意味한다.
자격상실 영구 종원 자격 상실 의미

제 13조(懲戒對象者의 出席) 징계 대상 자

1. 賞罰委員會는 該當者를 出席시켜 意見을 陳述케 하여야 한다.
상벌 위원회 해당자 출석 의견 진술
2. 賞罰委員會가 該當者에게 出席을 要求할때는 出席要求書를 開催日 3
상벌 위원회 해당자 출석 요구 출석 요구 서 개최 일
日前에 到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전 도달
3. 出席要求書를 該當者에게 直接 送付하는 것이 住所不明등 其他 事由
출석 요구 서 해당자 직접 송부 주소 불명 기타 사유
로 困難하다고 認定할때는 出席要求書를 家族등 關係人에게 送付할수
관련 인정 출석 요구 서 가족 관계 인 송부
있다.
4. 審議對象者가 海外滯留, 刑事拘束, 旅行, 其他의 事由로 賞罰委員會
심의 대상 자 해외 체류 형사 구속 여행 기타 사유 상벌 위원회
召集日부터 50일 以內 出席할수 없을때에는 書面에 의한 陳述을 하
소집 일 이내 출석 출석할수 없을때에는 서면 진술
게하여 審議 議決 할수있다. 이경우 書面에 의하여 陳述하지 아니할
심의 의결 서면 진술
때는 그 陳述없이 審議 議決할수있다.
진술 심의 의결
5. 審議 對象者가 出席要求書의 受領을 拒否하는경우 賞罰委員會의 陳述
심의 대상 자 출석 요구 서 수령 거부 상벌 위원회 진술
權을 拋棄한것으로 본다. 다만 出席要求書의 受領을 拒否한 경우에
권 포기 출석 요구 서 수령 거부
도 當該 賞罰委員會에 出席하여 陳述할수있다.
당해 상벌 위원회 출석 진술
6. 賞罰委員會의 出席要求에도 審議對象者가 出席치 않는경우, 闕席으로
상벌 위원회 출석 요구 심의 대상 자 출석 결석
審議決定한다.
심의 결정

제 14조(審問과 陳述權) 심문 진술 권

1. 賞罰委員會는 제13조1항의 規定에 의하여 出席한 審議對象者에게
상벌 위원회 규정 출석 심의 대상 자
嫌疑內容에 관한 審問을 行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關係人의
혐의 내용 심문 행 필요 인정 관계 인
出席및 關係書類를 要求하여 審問할수있다.
출석 관계 서류 요구 심문
2. 賞罰委員會는 審議對象者에게 充分히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해
상벌 위원회 심의 대상 자 충분 진술 기회 부여
야하며, 審議對象者는 書面, 또는 口述로서 自己에게 利益이되는
심의 대상 자 서면 구술 자기 이익
事實을 陳述하거나 證據를 提出할수있다.
사실 진술 증거 제출
3. 審議對象者는 證人의 審問을 申請할수있다. 이경우 賞罰委員會는 그
심의 대상 자 증인 심문 신청 상벌 위원회
採擇與否를 決定해야한다.
채택 여부 결정

제 15조(再審議 要求)

1. 審議對象者의 再審議要求가 있는경우, 賞罰委員會는 1회에 한하여 再審議를 하여야한다.
2. 제15조 1항의 要求가 있을시, 賞罰委員會에서 委員 3분의 2以上の 同意를 얻지못하면 再審議要求는 棄却된다.
3. 제15조 2항의 棄却되는경우 1차 賞罰委員會의 審議結果가 確定된다.

제 16조 (結果의 通報)

1. 賞罰委員會에서 賞罰에관하여 審議 議決된경우, 該當者에게 通知하여야한다.
2. 賞罰委員會의 審議決定은 該當者에게 通知함으로 效力이 發生한다.
3. 該當者에게 通知는 書面(內容證明)으로 하여야한다.
4. 제15조 3항의 措置에 審議對象者가 受領拒否를 하는경우 이를 受領한것으로본다.

제 17조(除斥 및 忌避)

1. 賞罰委員會의 委員中 審議對象者의 直系尊卑屬이나 그 懲戒事由와 關係있는 자는 當該 賞罰委員會의 審議 議決에 參與하지못한다.
2. 審議對象者는 審議 議員中에서 不公正한 議決을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만한 上堂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그 事實을 書面으로 疏明하고 忌避申請을 할수있다.
3. 제2항의 忌避申請이 있을때에는 賞罰委員會에서 該當議員의 忌避與否를 決定해야한다, 이경우 參席議員 3분의 2以上の 同意로 決定한다.

제 18조(懲戒의 量定)

1. 賞罰委員會가 懲戒事件을 議決함에 있어서는 懲戒對象者의 素行, 功績, 過誤, 改悛의情, 懲戒要求의 內容 其他 情狀을 參酌하여야한다.
2. 審議 對象者가 賞罰委員會에서 決定된 懲戒量刑에 對하여 不服하고, 不履行하는경우 加重 懲戒할수있다.

제 19조(議決 報告)

賞罰委員會의 審議 議決된 事項은 가까운 時日에 召集되는 總會 및 臨時

總會에 報告하여야한다.
총회 보고

제 20조(會議의 非公開)
회의 비공개

賞罰委員會의 會議은 公開되지않는다. 또한 賞罰委員會의 參與한자는
상벌 위원회 회의 공개 참여
職務上 알게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 상 비밀 누설

제 21조 (賞罰 委員會 處理臺帳)
상벌 위원회 처리 대장

賞罰委員會는 各級 會議에 대한 處理狀況을 管理하기위한 臺帳을 備置
상벌 위원회 각급 회의 처리 상황 관리 대장 비치
하여야한다.

附則
부칙

1. (施行日) 本規定은 審議 議決日부터 施行한다.
시행 일 본 규정 심의 의결 일 시행